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04.20.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3월 12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4월 1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 4. 15)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 案 說 明 者 : 행 정 구 장 송 요 출)

가. 제안이유

과학문화도시인 영등포구의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과학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학인재양성 사업의 추진 근거 규정 마련 (안 제22조)
-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키고자 과학문화확산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專 門 委 員 이 현 영)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추진사업과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등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審 査 結 課 : 原 案 可 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2호
----------	-------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과학문화도시인 영등포구의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기반을 확대하는 등 과학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신규조항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인재양성사업의 추진 근거 규정 마련(신설 - 안 제22조)
- 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키고자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안 제23조)
- 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안24조)
- 라.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과학교육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교육진흥법」 제7조 (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과학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편성예산으로 추진 가능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0. 2. 4 ~ 2. 24.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과학인재양성, 과학문화기반구축, 과학정보네트워크구축 등 과학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의 조제목 “협의회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중 자료와 서류의 제출을 자료의 제출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을 “주요항목지출금액”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5조(중전의 제2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하며,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과학육성사업

제22조(과학인재육성사업) 구청장은 지역 내 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
2. 학술발표회 및 과학관련 세미나 개최
3.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
4. 그 외 구청장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과학문화확산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임으로써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2. 과학 축제 및 과학 동호회 지원 사업
3.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4.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 관람 및 유치
5. 주민들의 과학이해증진 사업
6. 과학문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

7. 그 외 구청장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구청장은 과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책임과 의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과학문화 증진에 노력한다.</p> <p>② 구청장은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문화도시사업 지원정책을 추진한다.</p>	<p>제2조(책임과 의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과학인재 양성, 과학문화기반구축, 과학정보네트워크구축 등 과학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p>
<p>제5조(협의회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제2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p> <p>제1호 ~ 제3호 (생략)</p> <p>④ (생략)</p>	<p>제5조(협의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단서 삭제></p> <p>제1호 ~ 제3호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협의회 임기)</p> <p>① ~ ② (생략)</p>	<p>제6조(위원의 임기)</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실비보상) 본 협의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1조(실비보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p>
<p>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와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2조(의견의 청취) -----</p> <p>-----</p> <p>----- 자료의 제출 -----</p> <p>-----</p>
<p>제14조(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4조(협의회 운영세칙)-----</p> <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p> <p>-----</p> <p>-----</p>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과학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설치) --- 「 지방자치법 」 - ----- ----- -----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② (생략)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한다.	③ 제17조에 따른 ----- ----- -----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
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 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주요항목지출금액을 ----- ----- -----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략)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 -----
<신 설>	제4장 과학육성사업
<신 설>	제22조(과학인재육성사업) 구청장은 지역 내 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 2. 학술발표회 및 과학관련 세미나 개최 3.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 4. 그 외 구청장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개정안
	<p>〈신설〉 제23조(과학문화확산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임으로써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2. 과학 축제 및 과학 동호회 지원 사업 3.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4.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 관람 및 유치 5. 주민들의 과학이해증진 사업 6. 과학문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 7. 그 외 구청장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신설〉 제24조(지원) 구청장은 과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5장 보칙</p>
<p>제22조(포상) 구청장은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사업 추진에 매우 큰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p>	<p>제25조(포상) (현행 제22조와 같음)</p>
<p>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6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p>